

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

쪽수	현행	개정
Ⅲ. 장애인 치과 주치의 교육		
19	5. 교육이수관리 가. 교육과정 준수사항 ※ <추가>	5. 교육이수관리 가. 교육과정 준수사항 ※ 치과위생사는 장애인의 구강상태 특징 등을 이해하고 치과의사 감독 하에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수강을 권고함
Ⅳ.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		
24	1. 치과의사의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나. 3) 서류 보관 및 보존 기간 ○ <추가>치과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또는 건보공단에서<생략>	1. 치과 주치의 등록 나. 3) 서류 보관 및 보존 기간 ○ 신청인으로부터 원본 서류를 받은 기관 (치과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또는 건보공단)에서<현행과 같음>
25	2. 장애인의 치과 주치의 이용 나.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 절차 2)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 방법 다) 결과 통보 및 확인 ※ <신설>	2. 장애인의 치과 주치의 이용 나.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 절차 2)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 방법 다) 결과 통보 및 확인 ※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만 등록 사항 변경 가능
26	3) 서류 보관 및 보존 기간 ○ <추가>치과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또는 건보공단에서<생략>	3) 서류 보관 및 보존 기간 ○ 신청인으로부터 원본 서류를 받은 기관 (치과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또는 건보공단)에서<현행과 같음>
27	3. 치과 주치의 이용 변경 나. 치과 주치의 이용 변경 절차 및 방법 2) 치과 주치의 이용 변경 방법 다) 이용 변경 결과 통보 및 확인 <신설> 3) 서류 보관 및 보존 기간 ○ <추가>치과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또는 건보공단에서<생략>	3. 치과 주치의 이용 변경 나. 치과 주치의 이용 변경 절차 및 방법 2) 치과 주치의 이용 변경 방법 다) 이용 변경 결과 통보 및 확인 ※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변경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만 등록 사항 변경 가능 3) 서류 보관 및 보존 기간 ○ 신청인으로부터 원본 서류를 받은 기관 (치과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또는 건보공단)에서<현행과 같음>

쪽수	현행	개정
29	4. 치과 주치의 이용 해지·취소 나. 치과 주치의 이용 해지/취소 절차 및 방법 4) 서류 보관 및 보존 기간 ○ <추가>치과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또는 건보공단에서<생략>	4. 치과 주치의 이용 해지/취소 나. 치과 주치의 이용 해지/취소 절차 및 방법 4) 서류 보관 및 보존 기간 ○ <u>신청인으로부터 원본 서류를 받은 기관</u> (치과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또는 건보공단)에서<현행과 같음>

V.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

35	2. 산정지침 나. 장애인 구강관리료 2) 구강건강관리료 바) 위 '마)'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치과 주치의 대면 상담 후 주치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구강보건교육<추가>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.	2. 산정지침 나. 장애인 구강관리료 2) 구강건강관리료 바) 위 '마)'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치과 주치의 대면 상담 후 주치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<u>구강보건교육, 불소도포, 치석 제거</u>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6	3.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(점수당 단가: '24년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6.0원, 병원 및 종합병원 81.2원, <추가>) <table><tr><th>코드</th><th>분류</th><th>점수</th><th>금액(원)</th></tr><tr><td colspan="4">가.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</td></tr><tr><td>IB701</td><td>(가) 치과의원</td><td>354.70</td><td>34,050</td></tr><tr><td>IB702</td><td>(나) 치과병원</td><td>354.70</td><td>34,050</td></tr><tr><td>IB703</td><td>(다) 병원</td><td>419.33</td><td>34,050</td></tr><tr><td>IB704</td><td>(라) 종합병원</td><td>419.33</td><td>34,050</td></tr><tr><td>IB705</td><td>(마) 상급종합병원<생략></td><td>354.70</td><td>34,050</td></tr><tr><td colspan="4">나. 구강건강관리료</td></tr><tr><td colspan="4">(1) 구강건강관리료 I (불소도포(전악)+구강보건교육+치석제거(전악))</td></tr><tr><td>IB716</td><td>주: 뇌병변지적정신장애성 장애인에 대하여 구강 건강관리료I을 실시할 경우에는 「차23-1나」 소정점수의 300%를 별도 산정한다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IB711</td><td>(가) 치과의원</td><td>958.60</td><td>92,030</td></tr><tr><td>IB712</td><td>(나) 치과병원</td><td>992.58</td><td>95,290</td></tr><tr><td>IB713</td><td>(다) 병원</td><td>1,173.52</td><td>95,290</td></tr><tr><td>IB714</td><td>(라) 종합병원</td><td>1,173.52</td><td>95,290</td></tr><tr><td>IB715</td><td>(마) 상급종합병원<생략></td><td>992.58</td><td>95,290</td></tr><tr><td colspan="4">(2) 구강건강관리료II (불소도포(전악)+구강보건교육)</td></tr><tr><td>IB721</td><td>(가) 치과의원</td><td>523.98</td><td>50,300</td></tr><tr><td>IB722</td><td>(나) 치과병원</td><td>538.92</td><td>51,740</td></tr><tr><td>IB723</td><td>(다) 병원</td><td>637.19</td><td>51,740</td></tr><tr><td>IB724</td><td>(라) 종합병원</td><td>637.19</td><td>51,740</td></tr><tr><td>IB725</td><td>(마) 상급종합병원<생략></td><td>538.92</td><td>51,740</td></tr></table>	코드	분류	점수	금액(원)	가.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				IB701	(가) 치과의원	354.70	34,050	IB702	(나) 치과병원	354.70	34,050	IB703	(다) 병원	419.33	34,050	IB704	(라) 종합병원	419.33	34,050	IB705	(마) 상급종합병원<생략>	354.70	34,050	나. 구강건강관리료				(1) 구강건강관리료 I (불소도포(전악)+구강보건교육+치석제거(전악))				IB716	주: 뇌병변지적정신장애성 장애인에 대하여 구강 건강관리료I을 실시할 경우에는 「차23-1나」 소정점수의 300%를 별도 산정한다			IB711	(가) 치과의원	958.60	92,030	IB712	(나) 치과병원	992.58	95,290	IB713	(다) 병원	1,173.52	95,290	IB714	(라) 종합병원	1,173.52	95,290	IB715	(마) 상급종합병원<생략>	992.58	95,290	(2) 구강건강관리료II (불소도포(전악)+구강보건교육)				IB721	(가) 치과의원	523.98	50,300	IB722	(나) 치과병원	538.92	51,740	IB723	(다) 병원	637.19	51,740	IB724	(라) 종합병원	637.19	51,740	IB725	(마) 상급종합병원<생략>	538.92	51,740	3.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(점수당 단가: '25년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9.1원, 병원 및 종합병원 82.2원, 정신병원 82.5원) <table><tr><th>코드</th><th>분류</th><th>점수</th><th>금액(원)</th></tr><tr><td colspan="4">가.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</td></tr><tr><td>IB701</td><td>(가) 치과의원</td><td>354.70</td><td>35,150</td></tr><tr><td>IB702</td><td>(나) 치과병원</td><td>354.70</td><td>35,150</td></tr><tr><td>IB703</td><td>(다) 병원</td><td>419.33</td><td>34,470</td></tr><tr><td>IB704</td><td>(라) 종합병원</td><td>419.33</td><td>34,470</td></tr><tr><td>IB705</td><td>(마) 상급종합병원<현행과 동일></td><td>354.70</td><td>35,150</td></tr><tr><td colspan="4">나. 구강건강관리료</td></tr><tr><td colspan="4">(1) 구강건강관리료 I (불소도포(전악)+구강보건교육+치석제거(전악))</td></tr><tr><td>IB716</td><td>주: 뇌병변지적정신장애성 장애인에 대하여 구강 건강관리료I을 실시할 경우에는 「차23-1나」 소정점수의 300%를 별도 산정한다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IB711</td><td>(가) 치과의원</td><td>958.60</td><td>95,000</td></tr><tr><td>IB712</td><td>(나) 치과병원</td><td>992.58</td><td>98,360</td></tr><tr><td>IB713</td><td>(다) 병원</td><td>1,173.52</td><td>96,460</td></tr><tr><td>IB714</td><td>(라) 종합병원</td><td>1,173.52</td><td>96,460</td></tr><tr><td>IB715</td><td>(마) 상급종합병원<현행과 동일></td><td>992.58</td><td>98,360</td></tr><tr><td colspan="4">(2) 구강건강관리료II (불소도포(전악)+구강보건교육)</td></tr><tr><td>IB721</td><td>(가) 치과의원</td><td>523.98</td><td>51,930</td></tr><tr><td>IB722</td><td>(나) 치과병원</td><td>538.92</td><td>53,410</td></tr><tr><td>IB723</td><td>(다) 병원</td><td>637.19</td><td>52,380</td></tr><tr><td>IB724</td><td>(라) 종합병원</td><td>637.19</td><td>52,380</td></tr><tr><td>IB725</td><td>(마) 상급종합병원<생략></td><td>538.92</td><td>53,410</td></tr></table>	코드	분류	점수	금액(원)	가.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				IB701	(가) 치과의원	354.70	35,150	IB702	(나) 치과병원	354.70	35,150	IB703	(다) 병원	419.33	34,470	IB704	(라) 종합병원	419.33	34,470	IB705	(마) 상급종합병원<현행과 동일>	354.70	35,150	나. 구강건강관리료				(1) 구강건강관리료 I (불소도포(전악)+구강보건교육+치석제거(전악))				IB716	주: 뇌병변지적정신장애성 장애인에 대하여 구강 건강관리료I을 실시할 경우에는 「차23-1나」 소정점수의 300%를 별도 산정한다			IB711	(가) 치과의원	958.60	95,000	IB712	(나) 치과병원	992.58	98,360	IB713	(다) 병원	1,173.52	96,460	IB714	(라) 종합병원	1,173.52	96,460	IB715	(마) 상급종합병원<현행과 동일>	992.58	98,360	(2) 구강건강관리료II (불소도포(전악)+구강보건교육)				IB721	(가) 치과의원	523.98	51,930	IB722	(나) 치과병원	538.92	53,410	IB723	(다) 병원	637.19	52,380	IB724	(라) 종합병원	637.19	52,380	IB725	(마) 상급종합병원<생략>	538.92	53,410
코드	분류	점수	금액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01	(가) 치과의원	354.70	34,0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02	(나) 치과병원	354.70	34,0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03	(다) 병원	419.33	34,0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04	(라) 종합병원	419.33	34,0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05	(마) 상급종합병원<생략>	354.70	34,0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구강건강관리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1) 구강건강관리료 I (불소도포(전악)+구강보건교육+치석제거(전악)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16	주: 뇌병변지적정신장애성 장애인에 대하여 구강 건강관리료I을 실시할 경우에는 「차23-1나」 소정점수의 300%를 별도 산정한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11	(가) 치과의원	958.60	92,0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12	(나) 치과병원	992.58	95,29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13	(다) 병원	1,173.52	95,29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14	(라) 종합병원	1,173.52	95,29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15	(마) 상급종합병원<생략>	992.58	95,29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2) 구강건강관리료II (불소도포(전악)+구강보건교육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21	(가) 치과의원	523.98	50,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22	(나) 치과병원	538.92	51,7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23	(다) 병원	637.19	51,7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24	(라) 종합병원	637.19	51,7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25	(마) 상급종합병원<생략>	538.92	51,7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코드	분류	점수	금액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01	(가) 치과의원	354.70	35,1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02	(나) 치과병원	354.70	35,1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03	(다) 병원	419.33	34,47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04	(라) 종합병원	419.33	34,47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05	(마) 상급종합병원<현행과 동일>	354.70	35,1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. 구강건강관리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1) 구강건강관리료 I (불소도포(전악)+구강보건교육+치석제거(전악)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16	주: 뇌병변지적정신장애성 장애인에 대하여 구강 건강관리료I을 실시할 경우에는 「차23-1나」 소정점수의 300%를 별도 산정한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11	(가) 치과의원	958.60	95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12	(나) 치과병원	992.58	98,3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13	(다) 병원	1,173.52	96,4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14	(라) 종합병원	1,173.52	96,4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15	(마) 상급종합병원<현행과 동일>	992.58	98,3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2) 구강건강관리료II (불소도포(전악)+구강보건교육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21	(가) 치과의원	523.98	51,9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22	(나) 치과병원	538.92	53,4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23	(다) 병원	637.19	52,3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24	(라) 종합병원	637.19	52,3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IB725	(마) 상급종합병원<생략>	538.92	53,4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쪽수	현행	개정
Ⅶ.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		
63	<u><신설></u> 1.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안내 2. 자료제출 및 현황신고 의무	1. <u>시범사업 목적 달성 노력</u> ○ <u>치과 주치의는 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와 포괄적 관리 제공을 통해 시범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 ○ <u>치과 주치의는 주기적으로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장애인의 구강상태 특징을 이해하여, 장애인에게 최적의 구강관리서비스 및 예방치료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2.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안내 3. 자료제출 및 현황신고 의무
64	3. 연구과제 참여 협조 의무 4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5. 제재조치 등 <u><신설></u> ○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(중략)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건보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. ○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위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(생략) <u><신설></u>	4. 연구과제 참여 협조 의무 5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6. 제재조치 등 ○ <u>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사회통념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해지거나,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사업 참여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.</u> ○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(중략)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건보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. ○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위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(생략) ○ <u>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보공단이 시범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요양급여비용 등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.</u>
65	○ (생략) ○ (생략) 6. 준수사항 이행 약정체계	○ (생략) ○ (생략) 7. 준수사항 이행 약정체계

쪽수	현행	개정
별지서식		
85	[제9호]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 서식 D. 구강 내 평가(평가 시점 기준) D-4. 치아통증 ☐없음 ☐있음()개 <추가> ‘있음’의 경우 해당치아 아래 그림 참고하여 치아번호 입력	[제9호]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 서식 D. 구강 내 평가(평가 시점 기준) D-4. 치아통증 ☐없음 ☐있음()개 ○의사소통 불가 ‘있음’의 경우 해당치아 아래 그림 참고하여 치아번호 입력